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63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 : 김용만 • 민병덕 • 이훈기

이인영 • 이수진 • 한민수

박상혁 · 임광현 · 신영대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훈정책과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교육 등 정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형성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 ·개발, 교육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연수교육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69조제2항 중 위탁 대상 기관인 "공단"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의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
수교육) ① (생 략)	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	②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u>공단</u> 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보훈정책연구원